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2.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내용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내용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선박의 무선설비)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 자격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면허 및 경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정보통신·무선설비 산업기사(또는 기사·기술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성명·학력·전공과정·자격, 교육강사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심사에 관한 세부 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적발 및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최초 접수 시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해양사고 발생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에 자료 입력 업무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관제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대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

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하는 업무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3.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업무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세부절차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조건 등 설치지역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부 칙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그 밖의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MHz와 162.025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것으로 본다.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 관련)

	채널번호 (CH)	통신주파수(MHz)	통신방식
1	06	156.300	단신
2	08	156.400	단신
3	09	156.450	단신
4	10	156.500	단신
5	11	156.550	단신
6	12	156.600	단신
7	13	156.650	단신
8	14	156.700	단신
9	15	156.750	단신
10	16	156.800	단신
11	17	156.850	단신
12	20	(수신)157.000 (송신)161.600	복신
13	22	(수신)157.100 (송신)161.700	복신
14	67	156.375	단신
15	68	156.425	단신
16	69	156.475	단신
17	70	156.525	단신
18	71	156.575	단신
19	72	156.625	단신
20	73	156.675	단신
21	74	156.725	단신
22	75	156.775	단신
23	76	156.825	단신
24	77	156.875	단신
25	87	156.375	단신
26	88	157.424	단신

* 채널번호 15, 17번은 해양방제업무용으로 사용

* 채널번호 70번은 조난, 안전 및 호출을 위한 디지털선택호출용으로 사용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임교수(원) 및 책임교수를 두어야 하며, 교육과정별 책임교수와 과목별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임교수(원)과 책임교수의 자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임교수(원)과 책임교수의 자격

구분	기준
전임교수 (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표 3>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표 3>에 따른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교수	가. 전임교수(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표 3>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표 3>에 따른 과목을 7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

가. 강의실, 자료열람실, 브리핑실, 교수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교육과정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할 것

나.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건축 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표 2>와 같은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교육기관

에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표 2>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기준

장비명	보유기준	비고
음성처리 서버	1대	보유
VHF/DSC 송수신장비(헤드셋/스피커포함)	5대	보유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5대	보유
평가시스템 서버	1대	권장
통합감시제어 서버	1대	권장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들간에 가상으로 음성교신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평가시스템 서버”란 시뮬레이터 사용 중 학습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자가 교육생들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 할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초단파무선통신기/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 장비(VHF/DSC)”란 교육생 간의 음성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레이더 타겟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의 파악이 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6. “보유”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7. “권장”이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설비나 장비를 향후에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바.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3. 교육과정의 운영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시간은 아래의 표를 기준

으로 하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과목: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 3>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의 기준

교육과정(시간)	과목(시간)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300)	언어학(90), 교통관리학(30), 관제설비학(37), 항해학(20), 통신협조(10), 초단파무선통신(12), 인간학(10), 비상관제 및 실습(91)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60)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6), 인간학(10), 비상관제(11)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60)	인간학(14), 관제설비학(13), 항해학(6), 비상관제(13), 관제행정학(7), 관제법학(7)
현장직무교육 강사(30)	관제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의 이수(8)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전화번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 지:

4. 지정조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름:

해양경찰청장

직인

신청인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장)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장)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장) →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장)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